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701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 항소인 B

변론 종결 2017. 6. 7.

판결 선고 2017. 6. 28.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단512149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93,141원과 그 중 19,980,879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4. 9.경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신용보증원금20,000,000원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4. 4.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3. 20.까지, 대출과목 기타운전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100%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A는 2014. 4. 17. 하나은행과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물(2015. 6. 1. 이후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갚기로 되어있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3) A가 2015. 7. 20.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10.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5.하나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0,474,9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6. 4. 25. 위 대위변제금 중 494,0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9,980,879원(= 20,474,939원 - 494,060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162원(=

494,060원 × 12% × 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중미회수금액은 212,100원이다.

5) 원고는 A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금 잔액, 확정지연손해금,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의 합계 20,193,141원 및 그 중대위변제금 잔액 19,980,879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6.10. 29. 'A는 원고에게 20,193,141원과 그 중 19,980,879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2016. 9.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A에 대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는 2015. 6. 16. A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7.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의 재산상태

1)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6. 16.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100,000원이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성곡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42,000,000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5. 6. 16.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5,049,53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농협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성곡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권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6. 16.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A가 2015. 7. 20.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A의 신용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6. 4. 25.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머지않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A는 사해의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A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잃을 수 있다고 염려되어 피고의 신혼집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로 2015. 6. 16.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35,000,000원 포함)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같은 날 농협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원리금 등 35,399,530원¹⁾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2015. 7. 14. 이모 I로부터 20,5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의 돈을 보태 2016. 7. 15. A에게 24,535,776원(실 매수대금 25,000,000원에서 피고가 이전에 A에게 지급한 464,224원을 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였다.

한편, A는 부천시에서 음식점 'F'를 2016. 4. 22.까지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2)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무자력 상태가 되었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 내지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A의 책임재산을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 A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 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A의 사해의사가 위와 같이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채무자 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공동담보가액'이라한다)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A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2015. 6.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35,049,5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7. 2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4,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9,250,470원(= 64,300,000원 - 35,049,530원)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 19,980,879원, 확정지연손해금 162원, 미회수 법적절차비용 212,100원 등 합계 20,193,141원, ② 위 19,980,879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7. 6. 7.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86,743원(= $19,980,879\text{원} \times 0.12 \times 409\text{일} / 365\text{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22,879,884원(= 20,193,141원 + 2,686,743원)이 된다.

결국,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879,884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29,250,470원보다 적으므로,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인 22,879,884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2,879,8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22,879,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원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사실심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됨으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증액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늘어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한기수, 판사 강 건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구내 5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백동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87.66㎡

2층 87.66㎡

지층 87.6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제지층 제1호

건물내역 : 벽돌조 38.9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중구 대 231.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231.2분의 38.5 분.

1) 피고 측에서 대출원리금 35,049,530원 외에 350,000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제1심 법원의 성곡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참조).